

□ 제안이유

제58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회 기 : 1997. 7. 26 (1일간)

【 2 】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증개정조례안의요구안

제출년월일 : 1997. 7. 4.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1997년 6월 25일 양주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 이 유

- 숙박업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지목이 농지와 임야인 토지만으로 한정
(안 제4조 제1항)
- 상수원보호구역내 농지 및 임야가 아닌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수도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위배(안 제4조 제1항 제1호)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지역내 농지나 임야가 아닌 경우 설치가 가능
하도록 한 조항은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협의후 가능하도록
한 규정되어 위배(안 제4조 제1항 제4호)

- 20호이상 집단거주 부락내 지역(음식점 제외)의 농지, 임야이외 지목인 경우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교육, 지역정서에 맞지 않아 다수 민원발
생 소지가 있고 조례제정 취지에 어긋남(안 제4조 제1항 제6호)

□ 첨부

-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관계법령 발췌서
 - 수도법 제5조 제3항
 -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양주군 준농립 지역 내 숙박업 소득 설치 제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재의 요구안

1997년 6월 25일 양주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양주군준농립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
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

1 문제가 되는 내용

- 숙박업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지목이 농지와 임야인 토지만으로 한정
(안 제4조 제1항)
 - 상수원보호구역내 농지 및 임야가 아닌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수도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위배(안 제4조 제1항 제1호)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지역내 농지나 임야가 아닌 경우 설치가 가능
하도록 한 조항은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별도 협의 후 가
능하도록한 규정되어 위배(안 제4조 제1항 제4호)
- 20호이상 집단거주 부락내 지역(음식점 제외)의 농지, 임야이외 지목인 경우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교육, 지역정서에 맞지 않아 다수 민원발
생 소지가 있고 조례제정 취지와 맞지 않음(안 제4조 제1항 제6호)

2. 제의요구이유 : 관련법규(수도법, 건축법) 및 조례제정 취지에 위배

-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경우 지목상의 제한 사항이 아닌 오·폐수 발생등 상수
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목에 관
계없이 행위사항에 대하여 제한되어야 하는 수도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위
배.
- 안 제4조 제1항 제4호

문화재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
터 100미터이내지역의 경우 허가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협
의 후 결정되는 사항으로 동 규정에 위배
- 안 제4조 제1항 제6호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여건에 맞
지 않은 지역은 설치를 제한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바, 준농림지역내 농
지와 임야이외의 지목인 경우 20호 이상의 집단 취락지역도 설치가 가능하여
조례제정 취지에 위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 이라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 이라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제한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이하 “숙박업”이라한다)으로 한다.

(단, 복합건물내 식품접객업은 제외한다)

제4조(제한지역결정) ① 숙박업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지목이 농지와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원 보호구역내(음식점 제외)
2.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로부터 50미터 이내지역
(단, 음식점 제외)

3.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농지이 용계획중 전 용지와 담 용지내 우량농지.
4.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100미터 이내지역
5. 하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준용하천으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천수질 보존이 필요한 지역.
(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 인입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6. 20호이상 집단거주 부락내 지역(음시점 제외)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을 적용 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제한지역결정) ①숙박업소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u>(삽입)</u>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제4조(제한지역결정) ①----- ----- <u>지목이</u> <u>농지와 임야인 토지로서</u>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부 칙</p> <p>(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p> <p><u>(신설)</u></p>	<p>부 칙</p> <p>①(시행일) ----- -----.</p> <p>②(<u>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u>)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을 적용한다.</p>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水道法

하는 경우에는 미리 環境處長官과 建設部長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94·8·3>

④建設部長官 또는 市長・郡守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道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都市計劃法 第10條의 2의 規定에 의한 都市基本計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⑤建設部長官 또는 市長・郡守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道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고, 그 내용을 環境處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4·8·3>

⑥水道가 2이상의 市・郡의 管轄區域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가 水道整備基本計劃을 수립한다.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道整備basic計劃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4·8·3>

1. 水道(專用水道를 제외한다)의 整備에 관한 基本方針
2. 수돗물의 中長期需給에 관한 사항
3. 廣域上水源開發에 관한 사항
4. 水道供給區域에 관한 사항
5. 上水源의 확보 및 上水源保護區域의 지정・관리
6. 水道(專用水道를 제외한다)施設의 配置・構造 및 供給能力
7. 水道事業의 財源調達 및 實施順位
8. 낡은 水道管의 개량・交替등
9. 中水道의 開發・普及

第5條 (上水源保護區域指定等) ①環境處長官은 上水源의 확보와 水質保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上水源保護를 위한 區域(이하 “上水源保護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水源保護區域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上水源保護區域안에서는 다음 각號의 행위를 할 수 없다. <改正 94·8·3>

1.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水質污染物質・特定

水質有害物質,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有
毒物·特定有毒物, 農藥管理法에 의한 農藥,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
定에 의한 廢棄物 또는 污水·糞尿및畜產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污水·糞尿 또는 畜產廢水를 버리는 행위

2. 기타 上水源을 汚染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금지 행위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公告된 上水源保護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管轄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申告하여야 한다. <改
正 94·8·3>

1.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新築·增築·改築·再築·移轉·변경 또는 제거

2. 竹木의 栽培 또는 伐採

3. 土地의 耕作·盛土 기타 土地의 形質變更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上水源保護區域의 指定節次, 許可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8·3>

第6條 (上水源保護區域의 관리) ①上水源保護區域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市
長·郡守가 이를 관리한다.

②上水源保護區域이 2이상의 市·郡의 管轄區域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가 이를 관리한다.

③環境處長官은 上水源保護區域의 관리상태를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評
價하고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당해 區域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
를 요청할 수 있다.

第6條의2 (住民支援事業) ①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水源
保護區域을 관리하는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이하 이 條 내지 第7條에서 “管
理廳”이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上水源保護區域안의 住民에 대
한 지원사업(이하 “住民支援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
다. 이 경우 市長(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제외한다)·郡守는 道知事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支援事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所得增大事業

제 7 조 삭제 <95·12·30>

제 8 조 (건축허가) ①법 제 8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94·5·28, 95·12·30>

1. 삭제 <94·5·28>
 2.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3.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 ②법 제 8 조제 3 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의 규정을 말한다. <신설 95·12·30>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 6 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7 조 내지 제 9 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 6 조
 7. 도시공원법 제 8 조 및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 6 조
 10. 산림법 제62조·제70조 및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15. 수도법 제 5 조
 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제18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 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

(추 69)

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④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구조와 그에 따른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및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 증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대령 13869, 93·8·9, 94·12·23, 95·12·30, 96·6·29>

1. 총수가 41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2. 총수가 21층이상 41층미만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물·국보·사적 또는 중요민속자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물등의 보호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95·12·30>

⑥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5·12·30>

1.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그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단독주택등 3층이하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당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있는 지역안의 건축물 평균높이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3.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9조 (건축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

(주 74)